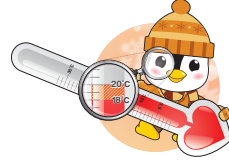


겨울철 전기절약 함께 실천해 주세요!!

권장사항



❶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(20℃ 이하) 준수 권장

- 권장대상: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
- 권장온도: 난방기 가동 시 10시~12시, 17시~19시(4시간)에는 실내온도를 20℃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(단, 공공기관은 18℃이하 의무)

❷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

- 권장대상: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 상점, 점포, 상가, 건물
- 권장행위: 영업(업무)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

의무사항



❶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

- 제한대상: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 상점, 점포, 상가, 건물 등에 적용되며,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
- 제한행위: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
 - ① 자동문: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
 - ② 수동문: 출입문을 개방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
 -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
 -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
 - ⑤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

과태료 부과(관련근거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)

- 12월은 홍보·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,
-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* 부과

※(최초) 경고장 발부 - (1회) 50만원 - (2회) 100만원 - (3회) 200만원 - (4회 이상) 300만원



산업통상자원부



에너지관리공단

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



이벤트 참여

올겨울! 20°C 행복

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한 세 가지 방법



내복입기



문풍지, 보온시트
붙이기



전열기 사용
자제하기



올겨울 적정실내온도



산업통상자원부



에너지연구원